

조선총독부관보(朝鮮總督府官報) 제203호(號) 1927(昭和 2)년 8월 31일 수요일

○ 고 시(告示)

조선총독부고시(朝鮮總督府告示) 제271호(號)

조선국유철도(朝鮮國有鐵道)

화물연락운송규칙(貨物連絡運送規則)을 아래[左]와 같이 정(定)함.

남만주철도주식회사소관철도(南滿洲鐵道株式會社所管鐵道)

1927(昭和 2)년 8월 31일

조선총독 임시대리(朝鮮總督臨時代理)

육군대장(陸軍大將) 우가키 가즈시게(宇垣一成)

조선국유철도(朝鮮國有鐵道)

화물연락운송규칙(貨物連絡運送規則)

남만주철도주식회사소관철도(南滿洲鐵道株式會社所管鐵道)

제1조(條) 조선국유철도(朝鮮國有鐵道)와 남만주철도주식회사소관철도(南滿洲鐵道株式會社所管鐵道)와 화물(貨物)의 연락운송(連絡運送)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본(本) 규칙(規則)에 의(依)함.

제2조(條) 연락운송(連絡運送)의 취급(取扱)을 하는 역소(驛所)는 각(各) 철도(鐵道) 각(各) 역소(驛所: 조선철도[朝鮮鐵道] 함경중부선[咸鏡中部線], 함경북부선[咸鏡北部線] 및 청진선[淸津線] 각[各] 역[驛]과 간이역(簡易驛) 및 남만주철도주식회사 소관철도(南滿洲鐵道株式會社所管鐵道) 단동역[安東驛]을 제[除]함)로 함. 단(但) 취급상(取扱上) 특수(特殊)의 제한(制限)을 부가(附加)한 역소(驛所)에 있어서는 그 제한(制限)에 의(依)함.

제3조(條) 화물(貨物)의 접속역(接續驛)은 남만주철도주식회사 소관철도(南滿洲鐵道株式會社所管鐵道) 단동역[安東驛]으로 함.

제4조(條) 아래[左]에 게시(揭示)한 화물(貨物)은 철도(鐵道)에서 특히 승낙(承諾)한 경우에 한(限)하여 그 운송(運送)을 인수(引受)함.

- 1 소화물급화물(小貨物扱貨物)로서 1개(箇)의 길이[長] 18척(尺), 중량(重量) 3톤(噸·ton) 혹은 용적(容積) 3백 입방척(立方尺)을 초과(超過)한 것 또는 차급화물(車扱貨物)로서 1개(箇)의 길이[長] 33척(尺), 중량(重量) 20톤(噸·ton) 혹은 용적(容積) 천팔백 입방척(立方尺)을 초과한 것
- 2 급외품(級外品) 제1종(種) 화약류(火藥類) 중(中) 병(丙)에 속(屬)한 것
- 3 급외품(級外品) 제4종(種) 철도차량(鐵道車輛)
- 4 급외품(級外品) 제5종(種) 사체(死體)
- 5 급외품(級外品) 제6종(種) 특종 고가품(特種高價品)
- 6 급외품(級外品) 제7종(種) 오염(汚穢)한 물품
- 7 조선국유철도화물운송규칙(朝鮮國有鐵道貨物運送規則) 제25조(條)제2항(項)의 적재제

한(積載制限)을 초과(超過)한 화물(貨物)

8 열차(列車)를 지정(指定)하여 운송(運送)하는 화물(貨物)

9 임시열차(臨時列車)로 운송(運送)하는 화물(貨物)

제5조(條) 화물(貨物)의 급종별(扱種別)은 각(各) 철도(鐵道)가 정(定)한 것에 의하여 어떤 급(扱)에서도 연락(連絡)의 취급(取扱)을 함.

제6조(條) 화물운송장(貨物運送狀), 화물운송통지서(貨物運送通知書) 및 화물상환증(貨物相換證)의 양식[式紙]은 각(各) 철도(鐵道)가 정(定)한 것에 의(依)함.

제7조(條) 운임(運賃), 할증운임[增運賃], 할증임금[增賃金] 및 요금(料金)은 아래[左]에 게시(揭示)한 사항(事項)을 제(除)하고 각(各) 철도가 정(定)한 것에 의하여 각각(各各) 별도(別途)로 이것을 산출(算出)하여 병산(併算)함.

1 조선국유철도화물운송규칙(朝鮮國有鐵道貨物運送規則) 제7조(條)는 대두(大豆)를 제(除)하고 남만주철도주식회사 소관철도(南滿洲鐵道株式會社所管鐵道)에 있어서 운임(運賃)을 계산(計算)할 경우에 이것을 준용(準用)함.

2 남만주철도주식회사 소관철도(南滿洲鐵道株式會社所管鐵道) 1차급(車扱)에 대하여는 동(同) 철도운임(鐵道運賃)으로부터 운임계산톤수(運賃計算噸數)에 대하여 1미국톤(米噸)당(當) 25전(錢)의 비율로써 계산(計算)한 금액(金額)을 저감(低減)함.

3 급외품(級外品) 제1종(種) 화약류(火藥類) 또는 급외품(級外品) 제2종(種) 위험품(危險品)을 다른[他] 품명(品名)에 의하여 탁송(託送)한 경우에 부가(附加)하여야 하는 할증운임[增運賃]은 각(各) 철도(鐵道) 각각(各各) 별도(別途)로 이것을 계산(計算)하지 아니하고 양(兩) 철도(鐵道) 모두 조선국유철도 화물운송규칙(朝鮮國有鐵道貨物運送規則) 제88조(條)의 정(定)함에 의(依)함.

운임(運賃) 및 요금(料金) 계산상(計算上) 조선국유철도소속 표기하중(朝鮮國有鐵道所屬標記荷重) 26톤(噸·ton)의 화차(貨車)는 남만주철도주식회사 소관철도(南滿洲鐵道株式會社所管鐵道)에 있어서는 동(同) 철도소속 표기하중(鐵道所屬標記荷重) 33미국톤(米噸)의 화차(貨車)로, 또 남만주철도주식회사소속표기 하중(南滿洲鐵道株式會社所屬標記荷重¹⁾) 33미국톤(米噸)의 화차(貨車)는 조선국유철도(朝鮮國有鐵道)에 있어서는 조선국유철도소속 표준화차(朝鮮國有鐵道所屬標準貨車)로 간주(看做)함.

제8조(條) 차급화물(車扱貨物)의 운송(運送)에는 조선국유철도소속 표기하중(朝鮮國有鐵道所屬標記荷重) 26톤(噸)의 화차(貨車) 또는 남만주철도주식회사소속 표기하중(南滿洲鐵道株式會社所屬標記荷重) 33미국톤(米噸)의 화차(貨車)를 사용(使用)함으로 하고, 어떤 화차(貨車)에도 1차(車)당(當) 30영국톤(英噸)(5만803근²)까지 적재(積載)함을 득(得)함.

제9조(條) 연락운송(連絡運送)에 관련된 화물(貨物)에 관한 손해(損害)로서 철도(鐵道)의 책

1) 역자: 원문에는 '車'로 誤記되어 있다.

임으로 귀속(歸屬)함이 가(可)한 것에 대하여는 각(各) 철도(鐵道)는 연대(連帶)하여 배상(賠償)의 책임을 지지 아니함.

손해배상(損害賠償)의 최고액(最高額)은 손해(損害)의 원인(原因)을 야기(惹起)한 장소(場所)가 속(屬)한 철도(鐵道)가 정(定)한 것에 의(依)함. 단(但) 손해(損害)의 원인(原因)을 야기(惹起)한 장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액(額)의 큰 것에 의(依)함.

제10조(條) 조선국유철도 화물운송규칙(朝鮮國有鐵道貨物運送規則) 제12조(條), 제14조(條)부터 제17조(條)까지, 제20조(條), 제24조(條) 제1호(號), 제2호(號) 및 제4호(號)부터 제6호(號)까지, 제25조(條)제2항(項), 제36조(條), 제40조(條), 제41조(條), 제46조(條), 제76조(條)부터 제79조(條)까지 및 제85조(條)의 규정(規定)은 연락운송(連絡運送)의 경우에 이것을 준용(準用)함. 단(但) 남만주철도주식회사 소관철도(南滿洲鐵道株式會社所管鐵道)에 있어서 청구(請求)를 접수(接受)한 화물(貨物)의 발역(發驛)으로의 송환(送還), 수하인(受荷人), 착역(著驛)의 변경(變更), 착역(著驛)에 있어서 인도(引渡)의 중지(中止) 혹은 그 해제(解除)에 대하여는 동(同) 규칙(規則) 제79조(條)의 지도수수료(指圖手數料)를 준용(準用)하지 아니함.

제11조(條) 각(各) 철도(鐵道)에 있어서 운송(運送)에 관한 제규정(諸規定)은 본(本) 규칙(規則)에 저촉(牴觸)하지 않는 한 연락운송(連絡運送)에 대하여 각각(各各) 그 소관(所管) 내(內)의 운송(運送)에 효력(效力)을 가짐.

부칙(附則)

본(本) 규칙(規則)은 1927(昭和 2)년 10월 1일부터 이것을 시행(施行)함.